



월
간

두 엔 누 리 회 보

www.duem.or.kr

제18호 2004년 11월 26일 발행인 김 상 원
편집인 손 이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국제B/D301호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전화 02/522-4260~1 FAX 02/522-4383

‘05년 농협납품지정 업체 추천업무 마감’

새로 개정된 농협 지정 부산물 비료 생산업체 운영기준에 따라 올해는 전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가 실시되었다.

1998년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농협의 생산업체 운영기준에 의해 품질관리는 계속 수정 보완하여 왔으나 생산시설에 대한 점검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신규로 지정받는 업체들은 공장설사를 하였지만 지정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는 현장 방문이나 시설점검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업계 실태 조사

이번에 약 2개월에 걸쳐 전국을 돌며 현장 방문을 한 결과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우선 생산 시설 및 공정에 있어 나름대로 상당 수준 정비가 되어있었다. 각 공장마다 주위 여건에 따라 수급이 잘 될 수 있는 원, 부자재 별로 제조 공정 및 시설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생산시설별로 처음 계획하였던 생산량에 비해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을 다음 몇 가지 내용으로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 첫째, 원, 부자재의 변화와 둘째, 업체의 변화 그리고 셋째, 이에 따른 생산 공정의 변화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원, 부자재 등 재료의 변화는 다시 축분을 사용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

체로 나누어지고 있다. 축분을 사용하는 경우 양계는 축사시설 개선으로 (스크레파에서 벨트콘베아로) 수분의 함량이 훨씬 줄어들었고 우분의 경우에는 퇴비사 설치의무화로 일정기간 퇴비사에 쌓아 두었던 것이 사용됨으로써 원자재 수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양돈의 경우만 축사구조가 슬러리 돈사로 바뀌는 바람에 수분함량이 높아져 원자재로는 값어치가 떨어지고 사용자체를 기피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양돈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양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분 조절제 등을 혼합해 적재해 놓았다가 수분이 어느 정도 줄어든 후 원자재로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발효시설 투입 전 원재료의 수분은 현저하게 줄어있는 실정이었다.

축분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주위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체들은 원자재 자체가 수분이 많지 않아 발효시설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거치는 공정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업체의 변화는 농협을 통한 보조사업이 시작된 1998년도 까지만 해도 공동퇴비장 설립으로 축분을 수거해 발효시키기 위해 일정 시설을 갖춘 업체와 발효시설 없이 축산 농가에서 적당히 처리한 축분을 유통만 시키던 업체 그리고 넓은 부지를 이용해 퇴적시켜 놓았다 적당한 시기에 판매를 하던 업체 즉 다시 말하면 발효시설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로 양극화 되어있었다. 그러던 것이 농협계통 출하 이후 수분을 50% 이하로 규제하면서 발효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업체가 속속 발효시설을 갖추며 목표 함수

율 50%를 겨냥한 건조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제조 공정에 변화는 1차 처리된 축분을 가져오지 못하는 공장에서는 발효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 처리 공정을 추가하여 발효시설 투입 전 일정기간을 공장 내에서 퇴적하여 상당량의 수분이 제거된 후 발효시설에 투입함으로서 생산량 증대 효과를 가져온 제조 공정의 변화를 들 수 있겠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우리 퇴비분야에도 적용된 것일까?

퇴비 품질의 판정에 수분의多少가 효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정통 학설을 무시하면서 까지 시행한 결과 모든 업체가 일정 규모이상 시설을 갖추게 하였고 발효시키지 않은 엉터리 불량퇴비를 유통만 시키는 업체는 최소한 등록된 업체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

1986년 당시 축분과 톱밥만 가지고 냄새 없는 퇴비를 만들어 샘플을 보였을 때 믿지 않았고 축분과 톱밥만 섞어 발효 시킬 때 엄청나게 올라가는 높은 온도와 발생되는 수증기를 보면 쉽게 믿으려 하지 않던 상황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생산량 검증은 우리 모두가 살길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생산능력 검증을 하여 다시는 남이 만든 제품을 유통만 시키는 그래서 원자재의 출처도 알 수 없는 불량비료 유통을 없애고자 업계 스스로가 결정하였다. 이 생산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은 우리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비료 관리법에서도 생산시설의 기준을 놓고 보완의 필요성은 느끼면서 기준설정의 문제로 방치되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생산능력검증은 품질

과 시설관리 외에도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연말 농협과 계약할 때 원가조사서를 제출하여 금액을 결정한다. 이 농협납품 계약 단가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운반비는 별도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시. 군단위 조합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단위조합 비료담당자와 운반비를 포함한 단가를 다시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생각 않고 무조건 많이 판매할 욕심으로 운반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단가에서 제외하고 공급을 약속하는 예가 있어 말썽이 되어왔다.

이른바 덤픽 판매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농협 계약 담당자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것은 물론 무조건 주문만 받아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계약한 후 정작 제품을 납품할 때는 아무제품이나 가져와 포장하여 공급함으로서 불량비료유통의 제일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이 제도가 철저히 시행되면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양 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으므로 무리하게 수주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판매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품질관리에 노력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뒷전에 서서 어디 어떻게 하나보자 하는 식으로 지켜만 보지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했으면 좋겠다.

‘05년 보조사업 진행 및 원가계산 산출 안내

대 다수의 시, 도가 지정업체 선정이 끝남에 따라 19일까지 각 해당 시도 지역 본부에 참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였다. 앞으로의 일정은 11월 30일까지 각 조합이 게시판이나 영농회 등을 통해 사전 고

시하여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12월3일부터 5일까지 지역농협에 계통신청을 하고 납품대상업체들은 12월 중으로 각 해당지역본부와 계약체결을 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물량공급을 실시하게 된다.

참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판매금액에 따른 원가계산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원가계산 방식에 대해 아직도 확실한 원칙이 정해져있지 않아 매번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원가를 제출하는 우리도 문제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농협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생산량이 검증되지 않은 관계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앞으로 생산능력검증이 실시되면 해결될 일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 업체들이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는 생산량 계산하는데 기본적인 참고 사항으로 발효 과정에 따른 분해감량 및 수분증발량에 관한 계산이다.

발효 공정은 대개 본 발효와 후 발효로 나누어주고 재료별로는 수분 조절을 위한 목질부와 기타 유기성자재로 나누어 준다. 본 발효 과정 중 재료별 분해 감량은 톱밥 등 목질부는 건물 당 1일 0.75% 축분 등 기타유기물은 1.5%로 본 발효기간 15일 동안 약 20%정도로 분해 감량된다고 본다.

수분은 이 유기물이 분해 되면서 일어나는 열량으로 인하여 약 60%정도 증발되며 전체적으로 보아 투입될 때 양에 비해 약 40%정도 감량된다고 보면 거의 틀림 없다.

단 발효기간 내 교반기는 1일 1회 이상 뒤집기 작업을 하고 통풍식은 m^3 당 100 l 정도의 송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경우이다.

후 발효 공정 중에는 1개월에 약 5%정도 분해 감량되는 것으로 계산되며 이때 뒤집기 작업은 1개월에 2번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

전체 공정으로 보아 처음 본 발효시작 전에 비해 생산량은 3개월 공정기간으로 약 50%정도 감량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큰 무리가 없다.

행정처분 등으로 계약 해지된 장소에 재 지정관계

매번 신규 지정추천 업무를 볼 때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경쟁업체들의 민원으로 항상 원칙을 고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농협중앙회와 협의해 같은 장소에 단순 상호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으로 재 지정요청이 들어오면 절대 불가 하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서류상 사업 주체가 바뀌어 있으면 그 진위를 밝히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너무 무리하게 규제 하다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고 잘못하면 소송관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사실 요즈음 같은 경우 농협납품업체에서 제외되면 공장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점차 농협납품 지정업체 운용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더욱 그러하다.

결국 해당업체로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도 쉽게 해결이 된다면 운용기준이 유명무실해 질수밖에 없고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도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협회로서는 서류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현지 방문 후 판단이 서지 않고 주위 경쟁업체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업체로부터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장과 도 지역지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도 주위에서 사실여부를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농협지정업체 관리 규정이 너무 엄격하

여 업체가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지난번 운용기준을 개정할 때 농협중앙회에서는 업체들을 생각하여 규정을 다소 완화시킬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지와 농민을 생각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로 인하여 완화시키려던 것이 원위치 된 적이 있다.

소비자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퇴비생산 과정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닐까?

우리는 우리대로 어렵게 불만의 소리가 튀어나올 정도로, 또 관리하는 농협은 농협대로 업체관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는 모두가 자업자득으로 우리 업계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결과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더 우리가 자발적으로 철저한 품질 및 시설 관리를 해나가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 달 신입 회원사 명단

경기도

상호: 신협성비료 대표: 이 재옥
주소: 경기도 이천시 율면 신추리 776-3
연락처: 031-643-3351

상호: (주)한토소프트 대표: 김 원삼
주소: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 766-3
연락처: 031-655-6690

상호: 한토발효 대표: 김 학기
주소: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455-1
연락처: 031-655-6690

상호: 토비 대표: 심 연숙
주소: 경기 광주시 실촌읍 건업리 426
연락처: 031-797-0808

상호: 대부비료 대표: 박 종춘
주소: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117-2
연락처: 031-633-8421

상호: 청미원바이오(주) 대표: 윤 두진

주소: 경기 양주군 회천읍 옥정2리 387
연락처: 031-865-3003

강원도

상호: (주)녹색기술 대표: 김 현순
주소: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51-3
연락처: 031-532-3865

충청남도

상호: 당진유기질비료 대표: 송 영득
주소: 충남 당진군 승성면 갈산리 717
연락처: 041-352-1227

전라북도

상호: (유)경농산업 대표: 유 희권
주소: 전북 김제시 요지면 신정리 200-7
연락처: 063-543-2410

전라남도

상호: 대세농산(주) 대표: 전 현수
주소: 전남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510-2
연락처: 061-334-7666

상호: (주)조은산업 대표: 문 미경
주소: 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998
연락처: 061-471-8987

경상북도

상호: (주)보경비료공업 대표: 이 운선
주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892
연락처: 054-842-7647

상호: (주)세진 대표: 최 인호

주소: 경북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200-9
연락처: 054-335-3559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라며 신입회원사께서는 각 지역별 회의에 적극 참여 하시어 업계 발전에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소식

지난 11월 11일은 제9회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이 날을 맞이하여 우수 농업인 및 시책유공자 표창 상신을 의뢰 받아 강원도 지회장이신 엄기만 사장님을 표창 상신한 결과 농림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